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정을호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927
----------	-------

발의연월일 : 2025. 11. 5.

발 의 자 : 정을호 · 최혁진 · 김문수
박홍배 · 조승래 · 이병진
전현희 · 홍기원 · 서미화
임호선 의원(10인)

제안이유

저출생과 학령인구 감소, 수도권 집중 심화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의 위기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는 고등교육 전반의 질적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있음. 또한 등록금 동결 장기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대학 재정여건이 악화되면서 교육·연구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등 구조적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음.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주로 사학진흥기금을 활용한 용자 및 일부 사업 지원과 관리 기능에 한정되어 있어, 변화된 고등교육 환경에서 요구되는 재정 통합관리, 성과관리, 구조개선, 청산지원 등 확대된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

이에 재단의 명칭과 설립 목적을 변경하고, 국·사립대학을 포괄하는 재정 통합관리, 성과분석 및 공시, 재정진단, 대학 구조개선과 청산지원 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고등교육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 제고

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재단 명칭 변경 및 설립 목적 확대(안 제1조)

재단 명칭을 ‘한국대학혁신재단’으로 변경하고, 설립 목적을 고등교육 혁신 기반 조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로 확대함.

나. 정의 규정 신설·정비(안 제2조)

고등교육기관, 사학기관, 대학, 산학협력단, 혁신, 청산, 경영관리, 정보화, 실태점검, 성과관리, 학교복합시설 등 법 적용 범위와 용어 정의를 구체화함.

다. 재단의 기능 확대(안 제7조)

기금 조성·운용, 재정진단, 구조개선 지원, 재정지원 조사·배분·성과관리·실태점검, 재정정보 집계·관리, 법령 준수 점검, 조사·연구, 경영혁신 지원, 청산 절차 지원, 기록물 관리, 위탁사업 수행 등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포괄적 사업을 규정함.

라. 폐교·해산 지원 근거 신설(안 제7조·제20조제2항)

학교법인 해산 및 폐교 시 청산 절차를 위한 행정·재정 지원, 잔여 재산 처리, 기록물 관리 근거를 마련함.

마.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정비(안 제8조~제16조)

임원 구성·임명 절차, 임기, 직무, 결격사유, 이사회 운영, 겸직 제한, 직원 임면 등 조직·운영 규정을 구체화함.

바. 국·공유재산 무상 대부·사용 근거 확대(안 제17조)

재단 및 특수목적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에 필요한 국·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간을 최대 50년까지 설정 가능하도록 함.

사. 대학혁신진흥기금 설치·운용(안 제18조~제24조)

현행 사학진흥기금을 ‘대학혁신진흥기금’으로 개편하고, 대학혁신지원계정과 구조개선지원계정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도록 함.

아. 감독 및 준용 규정(안 제33조·제34조)

교육부장관의 감독권, 검사 및 명령권을 명시하고, 「민법」상 재단법인 규정을 준용함.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한국대학혁신재단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대학혁신재단(韓國大學革新財團)을 설립하여
고등교육 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
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고등교육기관”이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교육부가
주무부처인 학교로 한정한다)를 말한다.
2. “사학기관”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학교, 법인 또는 평생교육
시설을 말한다.

가.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및 이를 설치·경영하
는 학교법인

나. 「평생교육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
은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
인

- 다.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력인정 학교형태의 평생교육시설 및 이를 설치·운영하는 법인
3. “대학”이란 고등교육기관 및 「평생교육법」에 따라 전문대학졸업자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을 의미한다.
 4. “산학협력단”이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5. “혁신”이란 고등교육기관 또는 이를 운영하는 법인이 교육과정, 경영, 재정, 인프라, 학생복지 등 전반에 걸쳐 교육의 질 향상, 운영의 효율성 제고, 사회적 수요 반영, 지속가능성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개선 활동을 말한다.
 6. “청산”이란 학교법인 또는 고등교육기관이 해산 또는 폐지되는 경우, 법률에 따른 해산절차 이행, 자산의 정리, 채무 변제 및 기록물 이관 등 행정적·재정적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경영관리”란 고등교육기관 또는 학교법인의 조직, 인사, 회계, 시설, 정보 등의 운영을 총괄하고 효율화하는 활동을 말한다.
 8. “정보화”란 고등교육기관의 행정 및 교육 관련 업무의 전산화,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관리,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해 경영 및 교육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활동을 말한다.
 9. “실태점검”이란 고등교육기관에 대해 정당한 법적 근거에 따라 운영 실태, 재정 상황, 법령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는 행정조사를

말한다.

10. “성과관리”란 고등교육기관이 재정지원 사업 등 공공재원을 사용하는 경우, 그 집행 결과와 영향을 지표 등을 통해 측정·분석하고 평가하는 활동을 말한다.

11. “학교복합시설”이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법인) 한국대학혁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4조(설립) 재단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조직에 관한 사항
8. 기금에 관한 사항
9.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1. 공고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변경할 때에는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재단이 아닌 자는 한국대학 혁신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7조(사업) ① 재단은 설립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대학혁신진흥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
2. 고등교육기관 재정진단을 통한 구조개선 지원
3. 정부의 고등교육기관 재정지원 조사, 재정보분, 성과관리 및 각종 실태점검
4. 고등교육기관 재정정보 집계 및 관리, 관련 법령 준수여부 점검
5. 고등교육기관 연수 및 조사·연구 사업
6. 고등교육기관 경영관리 혁신을 위한 정보화 등 자원관리 지원
7. 고등교육기관을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해산에 따른 청산 절차 진행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8. 해산된 학교법인과 폐지·폐쇄된 고등교육기관의 기록물 이관 및 관리
9.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10.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재단이 시행할 수 있는 사업
11. 그 밖에 고등교육기관의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에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사(이사장은 제외한다)와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교육부장관이 임명하고, 이사장은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추천과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이 임명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이사 중에는 학교법인의 임원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④ 제2항의 이사장추천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9조를 준용하며, 그 밖에 이사장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등) ① 재단의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非常勤)으로 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監査)한다.

제1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람

제12조(이사회) ① 재단에 그 업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 이사회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3조(비상근 임원의 보수 제한) 임원 중 비상근 이사와 감사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변상(實費辨償)은 할 수 있다.

제14조(직원의 임면) 재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재단의 임직원은 「형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16조(임직원의 겸직 제한) 이사장 및 직원은 사학기관의 이어나 직원을 겸할 수 없으며,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17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사용·수익)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의 설립·운영 및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

게 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재단(재단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을 포함한다)이 제21조제1호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수익계약의 방법으로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5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부 및 사용·수익허가의 기간은 그 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갱신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부와 사용·수익의 내용, 조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대학혁신진흥기금의 설치) ① 재단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대학혁신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기금은 대학혁신지원계정 및 구조개선지원계정으로 구분한다.

제19조(기금의 조성) ① 대학혁신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4.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5. 제30조에 따라 채권을 발행하여 생긴 자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② 구조개선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사립학교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잔여재산

3.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4. 제29조에 따른 차입금

5. 법인·단체 또는 개인의 기부금

6.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자금 및 수익금

③ 정부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제1호의 출연금으로 매년 일정 금액을 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제20조(기금의 사용) ① 대학혁신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재산(토지 및 건물에 한한다)과 교육용 설비·기자재의 개수(改修)·보수(補修) 및 확충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2. 제1호 외의 자금으로서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경영혁신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3. 제1호에 따른 재산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의 방식을 준용하여 추진하는 사업

4.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사학기관과 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을

위한 기숙사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여 학교복합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

6.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7. 그 밖에 대학 혁신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구조개선지원계정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나 지원을 위하여 사용한다.

1. 사학기관의 청산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사업

2. 사학기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법인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자금의 용자

3. 기금의 조성·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4. 그 밖에 사학기관 또는 해당 교육기관을 경영하는 법인의 구조개선에 필요한 사업

제21조(기금의 위탁)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기금의 관리자는 그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혁신진흥기금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2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업

2. 교육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22조(기숙사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제21조제1호에 따른 기숙사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재단이 운용·관리한다.

②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자금의 용자) ① 제2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자금을 용자하는 경우에는 담보 없이 할 수 있다.

② 자금의 용자 대상·조건·방법 및 상환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세입·세출예산서를 작성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7조(결산 등의 보고) 재단은 매 회계연도 시작 2개월 내에 결산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고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잉여금의 처리) 재단은 매 회계연도 결산상의 잉여금이 있을 때에는 손실금을 보전(補填)하고, 보전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을 때에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29조(차입)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장기차입 또는 단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단기차입금은 해당 사업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자금이 부족하여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금액만 다시 차입할 수 있다.

③ 재단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한 경우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0조(대학혁신진흥채권의 발행) ① 재단은 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학혁신진흥채권(이하 “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채권을 발행한 경우에는 이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이자차액의 보전) 차입금 등으로 발생하는 지급이자와 융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입이자와의 차액(差額)은 국고에서 보전한다.

제32조(출연금) ① 정부는 재단의 시설,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감독) 교육부장관은 재단의 업무를 감독하며 감독에 필요한 검사 또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제34조(준용) 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한국대학혁신재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교육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7. 「한국대학혁신재단법」